

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35호, **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 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과의 상생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내 서울의 숲 조성과 지하철 역사 내 지역상생 홍보공간 조성 등 추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
- 예치금을 감액하고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'19년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〈표 2-1〉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의 수입·지출 계획변경(안)

<수입계획>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계획 (C)	증 감 (C-B)
수 입 합 계	7,049	7,049	7,049	-
일 반 회 계 전 입 금	2,500	2,500	2,500	-
이 자 수 입	53	53	53	-
예 치 금 수	4,496	4,496	4,496	-

구 분	당 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계획 (C)	증 감 (C-B)
지 출 합 계	7,049	7,049	7,049	
비 용 자 성 사 업 비	2,842	3,324	3,974	650
기 본 경 비	3	3	3	
예 치 금	4,204	3,722	3,072	△650

### 3. 검토의견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1)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의 지출금액을 당초보다 39.8%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○ 다만, 현행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<sup>2)</sup>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% 이하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두고 있는 바,

- 지난 '19년 6월, 개최된 제3차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이미 자체 변경한 지출계획과 비교할 경우, 제출된 지출계획 변경규모는 실제 19.5% 변경되는 것으로 관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런 법규 등이 정하고 있는 20% 초과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

-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, 「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 “정책사업비 20%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”고 명시한 바<sup>3)</sup>, 기금운용부서가 관련 기준에 대한 선제적 적용을 통해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한 조치로 사료됨

〈표 3-1〉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출계획변경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당초	1 차 변경 <sup>주1)</sup>		2 차 변경 <sup>주2)</sup>		3 차 변경 <sup>주3)</sup>		4 차 변경 <sup>주4)</sup>					
	'19. 3.12 심의		'19. 4. 8 심의		'19. 6. 5 심의		'19. 8. 2 심의, 의회 승인요청					
	증가액	증가율	증가액	증가율	증가액 <sup>주5)</sup>	증가율 <sup>주5)</sup>	증가액 <sup>주6)</sup>	증가율 <sup>주6)</sup>				
2,842	2,842	-	-	2,842	-	-	3,324	482	16.9	3,974	650	19.5 <sup>주7)</sup>

주1) 1차 변경의 경우, 변동사항 없음

주2) 2차 변경의 경우,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('19. 4. 4)로 인한 구호지원을 하고자 강원도의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과목만을 변경함(자치단체 간 부담금 → 민간경상사업보조)

주3) 3차 변경의 경우, **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지원**(3억 2,200만원) 및 **하동 서울의길 조성**(1억 6,000만원)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 변경함

주4) 4차 변경의 경우, **지역상생 홍보관 조성**(3억 5,000만원) 및 **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**(3억원)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 변경함

주5) 3차 변경의 증가액 및 증가율의 경우, 2차 변경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임

주6) 4차 변경의 증가액 및 증가율의 경우, 3차 변경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임

주7) 4차 변경의 증가율의 경우, 3차 변경 대비 증가율은 19.5% 이며, 당초 대비 증가율은 39.8% 임

3) 행정안전부, 「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293

□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①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및 ②지역상생 홍보관 조성을 하고자 계획하는 바

○ 지출계획중 재무활동(42억 400만원)을 △6억 5,000만원 감액하고,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6억 5,000만원 증액하여 ①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과 ②지역상생 홍보관 조성을 지출계획 하고자 하는 것임

□ ①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의 경우, 지난 4월, 강원도 고성, 속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의 복구를 위해 강원도 및 속초시와 협의하여 산불 피해지내 1.2ha 규모의 '서울의 숲' 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<sup>4)</sup>

○ 강원도에서 단순 조림식재가 아닌 도시숲 형태로 조성을 요청함에 따라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, 강원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등 3억원(설계비 1,500만원, 공사비 2억 8,500만원)을 지출계획 한 것으로

-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 제2호는 “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”를 기금의 용도로 정하고 있어<sup>5)</sup> 지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
4) 서울특별시, 자연생태과-13204 ('19. 7.25) “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계획”

■ 위치 :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산275-1일대

■ 규모 : 1.2ha(공유림)

■ 사업내용 : 산불 피해지내 서울의 숲(도시숲) 조성

■ 추진절차 : 강원도 협의 및 세부계획 수립 → 실시설계(용역 과정에서 산림청 설계 검토, 강원도 협의 등) → 공사발주 → 공사준공 → 시설물 인계인수(강원도 속초시) → 관리 및 모니터링(속초시)

5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

□ ②**지역상생 홍보관 조성**의 경우,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환승 무빙워크 구간(7↔9호선)에 55인치 영상모니터 60대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소재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(광역 17개, 기초 226개)를 홍보하는 ‘지역상생 홍보관’을 조성하고자 3억 5,000만원을 지출계획 한 것이나<sup>6)</sup>

○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는 동 기금의 용도를 “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”로 정하고<sup>7)</sup>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2조를 통해 “타지방자치단체의 범위”를 “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”한다고 명시하고 있음<sup>8)</sup>

- 따라서 동 기금을 통해 25개 자치구와의 교류협력에 기금재원을 지출할 경우, 조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「지역상생홍보관」 조성계획<sup>9)</sup>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○ 아울러 대외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<sup>10)</sup>

6) 서울특별시, 시민소통담당관-12262 ('19. 7.30) “ 「지역상생 홍보관」 조성계획”

7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■ 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(이하 생략)

8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■ 제2조(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) ① 이 조례에서 ‘국내 타지방자치단체’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)를 말한다.

9) 서울특별시, 시민소통담당관-12262 ('19. 7.30) “ 「지역상생 홍보관」 조성계획”

10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■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조성될 「지역상생홍보관」에서 서울시에 대한 자체 홍보를 할 경우, 동 기금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아 「지역상생홍보관」 조성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②**지역상생 홍보관 조성**의 경우, 관련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관련 홍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 바,
- 당초 지출계획 한 사업계획<sup>11)</sup>의 홍보대상중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금을 통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부서가 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명확히 담보된 이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가 순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

11) 서울특별시, 시민소통담당관-12262 (’19. 7.30) “ 「지역상생 홍보관」 조성계획”